

#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승강기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

의안  
번호 2016 -

제출일자 : 2016. 10. .  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## 1. 요구이유

-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투자유치를 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교통망 등 인프라가 미비하고 기술인력이 부족한 낙후지역으로 기업유치가 곤란 하므로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함.
-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내 승강기관련 기업체 유치에 총력을 경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지원대상 : 거창군외 소재하는 기업이 승강기전문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·증설하는 경우

나. 지원계획

- 입지보조금

지 원 조 건		지 원 방 안	비 고
①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신규상시고용 10명 이상	경남도외	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지정에 따른 입지보조금 50%+추가 20% 지원 (※ 도비 40%, 군비 30%)	
	경남도내	70%지원(군비)	
②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상시고용 10명 이상	경남도 내·외	50%지원(군비)	

- 기타보조금 : 경상남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방안과 동일

다. 소요예산

투자기업 지원(안)

[단위 : 억원]

구 분	계	도 비	군 비	비 고
<b>계</b>	<b>138.09</b>	<b>72.74</b>	<b>65.35</b>	
입지 보조금	104.09	45.54	58.55	
시설 보조금	8.00	6.40	1.60	
고용 보조금	12.00	9.60	2.40	
교육훈련 보조금	12.00	9.60	2.40	
이전 보조금	2.00	1.60	0.40	

※ 입지보조금 산출근거

[단위 : 억원]

구 분	대 상	계	도 비	군 비
<b>계</b>		<b>138.09</b>	<b>72.74</b>	<b>65.35</b>
입지 보조금 (134,419㎡)	소 계	104.09	45.54	58.55
	① 촉진대상 70%	79.69	45.54	34.15
	② 비 대상 30%	24.40	-	24.40

군비 연차별 소요예산

[단위 : 억원]

구 분	계	2017	2018	2019	비고
<b>계</b>	<b>65.35</b>	<b>3.58</b>	<b>31.7</b>	<b>30.07</b>	
입지 보조금	58.55	3.58	28.3	26.67	
시설 보조금	1.60		0.8	0.80	
고용 보조금	2.40		1.2	1.20	
교육훈련 보조금	2.40		1.2	1.20	
이전 보조금	0.40		0.2	0.20	

3. 관련법규

- 「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」 제3조
- 「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」 시행규칙 제3조~제8조
- 「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」 제12조, 제18조~21조의2
- 「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」 제7조제2항

# 관 련 법 규

## □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

### 제3조(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)

① 경상남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도외 소재 공장의 도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시장·군수와 협의하고 제23조의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
  2.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-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,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보조금,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·군수와 협의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## □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### 제3조(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)

- 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구 지정일 현재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,058㎡ 이상이어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북부권역 등 낙후지역의 개별입지에 대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별도 지정할 수 있다.
- ③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은 시·군별 공장입지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지정가능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- ④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  - 1. 도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
  - 2. 기업이 지정지구에서 공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
- ⑤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.

#### 제4조(입지보조금)

-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안에 입지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. 이 경우 투자금액의 범위는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·임대료 및 건축비, 시설장비 구입비,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으로 하고,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는 도외 소재기업이 도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.
- ② 경상남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입지보조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시장·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.
-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·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제5조(고용보조금)

-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12개월 기간 내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은 공장 등록 후 5년으로 하되, 기업당 지원 총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에 대해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·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6조(교육훈련보조금)

-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기간은 공장 등록 후 5년으로 하되, 기업당 지원 총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에 따라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,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,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,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,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,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·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7조(시설보조금)

-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
-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·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시장·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이 경우 시설보조금의 지급범위는 기업이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건축비,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.

#### 제8조(이전보조금)

-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 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
-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·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□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

#### 제12조 (입지지원) <개정 2005.6.20>

-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정상적인 분양가(조성원가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분양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.
-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,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로부터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.

## 제18조 (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)

- ① 군수는 도 외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  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
  2.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-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구 지정일 현재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- ③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  1. 도 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
  2. 도내·외 기업이 지정지구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

## 제19조 (국내기업의 지원)

- ① 군수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.
-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하여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50퍼센트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로부터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.

-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 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제19조의2(채권 확보)

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 이행확보를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1순위 저당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## 제20조(이전보조금)

- ① 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#### 제20조의2(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)

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9조제1항·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### □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

#### 제7조(승강기산업체 투자 지원)

-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밸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.